

연대 보증 약정서

본 약정서는 연대보증인 [REDACTED] (이하 "갑"이라 칭한다)는 채권자 주식회사 헤라대부중개(이하 "을"이라 칭한다)와 채무자 [REDACTED] 사이에 존재하는 채무자의 채무를 연대보증 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 채권채무

"을"은 채무자에 대해 다음의 채권을 지니고 있으며 계약 사본을 "갑"에게 제출한다.

- 1) 채 권 명 : 금전소비대차계약
- 2) 보 증 액 : 일금 사억오천만 원정 (₩450,000,000)
- 3) [REDACTED]
- 4) 이 율 : 연 20%, 연체이율 : 연 24%
- 5) [REDACTED]
- 6) [REDACTED]

제2조 연대보증

"갑"은 제1조의 내용에 따른 채권채무를 확인하면서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을 연대 보증할 것을 확인하며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채무자와 동일하게 채무의 변제 책임을 부담한다.

제3조 채무자 통지

"갑"은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해당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을"은 연대 보증인이 변제할 경우 해당 사실을 숨기고 채무자에게 채무의 변제를 청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분쟁해결

"갑"이 본 약정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을"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을 그 관할로

하여 재판함으로 해결한다.

제5조 특약사항

상기 일반 사항 이외에 "갑"과"을"은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특약 사항이 본문과 상충 되는 경우에는 특약 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1. "갑"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시 "을"에게 채무를 즉시 변제 해야 한다.
2. "을"의 채무 변제 요청이 발생시 "갑"은 즉시 채무를 변제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발생하는 연체금 또한 "갑"이 책임지기로 한다.
3.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시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을 경, 공매 또는 환가 처리하여도 기 설정된 보증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갑"은 나머지 차액부분에 대한 연대 보증의 의무로 채무를 변제 하여야 한다.
4.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경, 공매 또는 환가 처리시 발생한 금액은 1순위 비용, 2순위 이자상환, 3순위 원금 순으로 한다.
5.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연체이율은 연 24%로 한다.
6. "갑"은"을"에게 금전소비대차 공증서를 발행하기로 한다.

"갑"		"을"	
성명		상 호	주식회사 헤라대부중개
주민번호		대 표	한 에 녹(인)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825-88-00732
주 소		연 락 처	1544-9471
		주 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75번길 38-10, 204호(장항동,우림로데오스위트)